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재외동포청 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,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상 법무부 파견 인력 1명(7급)을 외교부로 이체하는 한편,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전문경력관)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

재외동포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3항 전단 중 “5명(5급 3명, 7급 2명)은 법무부”를 “4명(5급 3명, 7급 1명)은 법무부”로 한다.

별표 1 중 4급 또는 8등급 이하 “100”을 “99”로 하고, 4급 또는 8등급 이하 99 다음에 “전문경력관 1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재외동포정책국) ① · ② (생 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. 1. ~ 10. (생 략) <u>11.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</u> 12. (생 략)	제9조(재외동포정책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12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· ② (생 략) ③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(5급 1명, 7급 1명) 은 교육부, <u>5명(5급 3명, 7급 2</u> <u>명)은 법무부</u> , 1명(5급 1명)은 행정안전부, 2명(5급 1명, 7급 1 명)은 국가보훈부, 1명(7급 1명) 은 고용노동부, 1명(5급 1명)은 국세청, 1명(7급 1명)은 관세청, 3명(5급 2명, 7급 1명)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 야 한다.	제12조(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4명(5급 3명, 7급 2명)</u> <u>은 법무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재외동포청 직제 [별표 1]

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(제1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4급 또는 8등급 이하	<u>100</u>	<u>99</u>	-1
<u>전문경력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313